

## 석·박사통합과정 운영규정

제정 2015. 02.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통합과정이란 석사교육과정과 박사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통합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정원) 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중도 포기자 또는 중도 탈락자) ① 중도 포기자 및 중도 탈락자는 학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자퇴원을 소속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 포기자 또는 중도 탈락자 중 석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자에 한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로써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 시킨다.

③ 중도 포기자 또는 중도 탈락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학과의 석사학위과정으로 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박사학위과정으로 변경은 불허한다.

제6조(박사과정 재학인정) ① 통합과정 5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전공학점 24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한다.

② 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학적관계 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박사과정 재학중”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박사학위의 수여) 학칙 및 학위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규칙과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